#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유동수·김병욱·전해철

고용진 • 이개호 • 이상직

안규백 · 송석준 · 김교홍

박 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입법화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법·제도상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 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 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 다.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 라.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 마.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 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의8 신설).
- 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 원회가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9 신 설).
- 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안 제14조의9 신설).

#### 법률 제 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의2(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라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

- 인 내용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3(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 역야 한다.
  - ③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 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6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부실정 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 ⑤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6(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7(평가위원회의 심의·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 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스 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의9(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10(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평가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평가 등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 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9(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시 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 제28조제1항제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8. 제9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9. 제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제출(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에 한정한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한 경우
  -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2.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9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제출(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에 한정한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3 및 제1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장의2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
	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u>&lt;신 설&gt;</u>	제9조의2(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
	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
	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
	(이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u>한다.</u>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선
	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
	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
	요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

용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 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9조의3(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 출) 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은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 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 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 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그</u>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정상화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 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 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 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제9조의6에 따른 평가위 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 다)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신 설>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 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반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 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

<신 설>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 립·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

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 융위원회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평가위원회의 심의·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 정상화계획·평가보고서 및 부 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자체 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 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 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스템 적 중요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 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 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 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수 있다.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 조의7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

<신 설>

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 등을 평가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 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 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9(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의 조치 이행 등) ① 시스템 적 중요 금융기관은 제9조의7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 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 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⑤ -----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요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 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의10(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의 협조의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 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평가 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 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 립·평가 등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감독원</u> <u>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u> <u>한다)에게</u>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감독원</u> -----<u>금융감독원</u>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장에게----.

전기 전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및 정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결정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 정조치의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 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 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 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①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 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 가하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 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 여분이 있는 경우
-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제28조(과대료) ① 금융기관이 다 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 17. (생략)

제28조(과태료)	1	 	-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제9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제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제출(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
   수
-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 11.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u>12.</u> ~ <u>23.</u> (현행 제6호부터 제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3. (생략)

17 ゔ フ	가기이	· 같음)
17요/	<b>ハハ</b> エ	・乍石り

- 2 -----
  - 1. (현행과 같음)
- 2.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9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제출(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경우
- 6.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 7.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9.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